

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17. 9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사회맞춤형교육사업 (이하 “사업” 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단의 제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을 준용한다.

제 2 장 사업운영 체계

제3조(전담조직) ① 총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사업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할 경우 동등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③ 사업단에는 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혹은 선임직원 이상으로 보한다.

④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및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4조(조직구성 및 역할) 사업단에는 3개의 세부지원팀을 둔다.

1. 교육지원팀 : 사업 기획 및 총괄지원
2. 산학협력지원팀 : 참여 기업 발굴 및 관리
3. 평가지원팀 : 사업 자체평가

제5조(업무) ① 사업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3. 정규/비정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4.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업연계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자체운영규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

7.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②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학 내에 주관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 3 장 사회맞춤형교육위원회

제6조(교육위원회 구성) 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맞춤형교육위원회(이하 “교육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본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원 및 기업인사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

④ 위원장 유고시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사업단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거나 주관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⑥ 교원, 기업인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
⑦ 교육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7조(교육위원회 기능)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사업 계획,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
2. 교육과정 운영 실습실, 강의실, 실험·실습장비 확보 관한 사항

3. 사업 자체운영규정 및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

4. 기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운영추진일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
2. 위원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단,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위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9조(자체평가위원회 구성)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

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평가위원회는 내부인사 3인과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②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평가위원회 역할) 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계획의 심의
2. 자체평가 추진상황의 심의
3. 자체평가결과 심의
4.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
5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

제11조(회의)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.

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평가절차) ①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사업 평가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(이하 "계획안 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가방법) ① 정량적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를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
② 수요자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성과지표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다.

③ 평가영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장 ExpUp산학협의회

제14조(정의) ① “ExpUp산학협의회”라 함은 학생선발, 교육과정 운영, 현장실습 등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교와 사회맞춤형 주문식 취업약정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혹은 가족회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
② “가족회사”란 함은 현장실습, 취업, 기술지도 및 자문, 공동연구개발, 기술인력 교류, 연구장비공동활용 등 유기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.

제15조(구성) ExpUp산학협의회는 3개의 세부협의체를 둔다.

1. Sub-ExpUp학과협의체 : 교수-가족회사 인사로 구성, 융복합 프로그램 참여

2. ExpUp학과협의체 : 교수-사업 참여기업 인사로 구성, 사업 참여 및 취업약정 실행
3. ExpUp대학협의체 : ExpUp산학협의체 참여기업 관리 및 사업 지원 등 기업신속대응센터(URI) 기능 역할

제16조(협의체 역할) ExpUp산학협의체는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수행
2. 기기 및 장비 공동활용 및 정보교류
3. 사회맞춤형 OJT/OffJT 교육프로그램 협조 및 참여
4. 사업 자체평가 외부인사로 참여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7조(협약 및 탈퇴) ① ExpUp산학협의체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맞춤형 주문식교육 협약서, 채용약정서 혹은 산학협력체결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단은 체결서를 접수한 후 학과 및 기업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ExpUp산학협의체 가입을 완료한다.

③ ExpUp산학협의체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 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.

④ 사업 참여기업은 학과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약정이 불가능 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 6장 재정

제18조(재정) 사업단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9조(기타)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7년 사업 시행부터 적용한다.